

16. 건설기계관리법중개정법률

법률 제5,905호 1999. 2. 8

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건설기계의 구조변경시 시·도지사의 사전승인과 사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조사만 받도록 하여 소유자가 구조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, 건설기계가 도로운행중 과적 등으로 도로법 등을 위반한 경우 운전자를 처벌하는 외에 일정기간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2중 처벌에 따른 민원과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자 건설기계 사용정지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.

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의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때 또는 건설기계의”를 “건설기계의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중 “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”를 “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범위와 그 절차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32조제2항중 “과반수가”를 “3분의 1이상”으로 한다.

제34조를 삭제한다.

제41조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설기계 사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벌칙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주택회보